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2-28

서 울 행 정 법 원

제 1 1 부

판 결

사 건	2017구합51815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
원 고	[redacted]주식회사
피 고	1.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	2.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변 론 종 결	2017. 12. 8.
판 결 선 고	2018. 1. 12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이 2015. 9. 11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가산세 합계 2,141,972,770원 부과처분과 피고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이 2015. 9. 11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가산세 합계 540,172,69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2-28

이 유

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,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(대법원 1997. 8. 26. 선고 96누6707 판결 등 참조).

갑 제1, 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피고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이 2015. 9. 11.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가산세 합계 2,141,972,770원을 부과하였다가 동종 쟁점 사건에 관하여 원고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(대법원 2017. 11. 9. 선고 2016두55643 판결 등)이 선고되자,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. 12. 8.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, 피고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이 2015. 9. 11.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가산세 합계 540,172,690원을 부과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. 12. 12.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한 부과처분은 직권으로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.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하태흥

판사 박용근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2-28

판사 이정훈